

의안번호	2208375
의 퇴 인	정일영의원
회 답 일	2025. 4. 17.
추계번호	25C1033

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원(연평균 2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-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5조)	100	-	-	-	-	100	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)	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강화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7조(통계조사)	정부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제약바이오헬스산업 분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8조(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)	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(제1항)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9조(국고 보조)	정부는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약바이오헬스기업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1. 연구개발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. 국산 원료의약품 개발 및 원료·소재·부품·장비 활성화 3.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4. 해외 연구인력 유치 5.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관련 분쟁 해결 6.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7. 그 밖에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5	안 제12조(특구의 기반 시설 설치 등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1. 용수공급시설 2. 전기공급시설 3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시설 4. 간선도로 5. 폐수 등 처리 시설 6. 그 밖에 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	재량규정
6	안 제14조(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투자 촉진과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약바이오헬스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5조(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약바이오헬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입주하는 제약바이오헬스기업 및 특구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1. 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. 「농지법」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. 「초지법」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8	안 제16조(특구입주기관에 대한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제약바이오 헬스기업 및 연구기관(이하 “특구입주기관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입주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 1. 특구입주기간 제약바이오 헬스산업 관련 설비투자,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2. 특구입주기관의 생산시설, 설비 등의 설치·구축·취득 비용 3. 특구입주기관의 특구 내 토지 취득 비용	
9	안 제20조(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부지의 조성,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 및 의료시설·교육시설·연구시설·주택 등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
10	안 제25조(전문인력양성)	정부는 제약바이오 헬스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·대학·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. 특구 내 제약바이오 헬스 관련 대학의 유치 2.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. 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4.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·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	
11	안 제26조(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)	정부는 제약바이오 헬스산업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(이하 “산업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(이하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“계약학과등”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정부는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계약학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또는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	
2	안 제7조(통계조사)	×	- 실시 중 · 바이오헬스 산업 실태조사
3	안 제8조(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)	×	-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
4	안 제9조(국고 보조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
5	안 제12조(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)	×	-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
6	안 제14조(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)	×	-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
7	안 제15조(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)	×	-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
8	안 제16조(특구입주기관에 대한 지원)	×	-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
9	안 제20조(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 기업 지원)	×	-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
10	안 제25조(전문인력양성)	×	-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
11	안 제26조(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 정 등의 설치 지원)	×	-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국고 보조(안 제9조)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사업을 일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,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

시점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표 2] 안 제9조와 현행 사업 비교

(단위: 백만원)

안 제9조 각 호	현행 사업(2025년)
1. 연구개발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	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(20,602)
2. 국산 원료의약품 개발 및 원료·소재·부품·장비 활성화	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(12,670)
3.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	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(628) 바이오헬스 아카데미(2,000)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(9,890)
4. 해외 연구인력 유치	해당없음
5.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관련 분쟁 해결	
6.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	제약산업 육성 지원(36,746)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(16,231)

자료: 보건복지부

- 실태조사(안 제7조)와 관련하여서는 바이오헬스 산업 실태조사(국가승인통계)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바이오헬스 산업 실태조사(국가승인통계)를 위하여 2025년에 3억 7,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

[표 3]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 예산 편성 현황: 2021~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1	2022	2023	2024	2025	합 계
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	245	240	340	350	370	1,545

자료: 보건복지부

- 한편 제정안은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(안 제12조),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(안 제14조),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(안 제15조), 특구입주기 관에 대한 지원(안 제16조),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(안 제20조), 전문인력양성(안 제25조),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(안 제26조) 등의 각종 지원 및 특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,

이는 특구 지정에 따른 지원내용으로서 현시점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·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
- 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
- 기본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 - 보건복지부는 「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비로 2022년도에 1억 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4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기본계획 수립 (안 제5조)	100	-	-	-	-	1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(안 제8조)

- 제정안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, 특구 지정 및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,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위원회와 관련하여 심의·의결 사항이 명시(안 제8조제1항)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위원 구성 등 해당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(안 제8조제2항) 현시점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